환경부

보 도 자 료

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보도 일시	2022. 3. 15.(화) 12:00 (수요일 조간)	배포일시	2022. 3. 14.(월)
담당 부서	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	책임자	과 장 전 완 (044-201-7360)
		담당자	사무관 박재근 (044-201-7367)

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 관리로 불법행위 예방

-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, 행정예고 -

□ 환경부(장관 한정애)는 사업장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.

○ 이번 고시는 올해 1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·운반, 처분·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도록 '폐기물관리법'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고, 올해 10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순차적*으로 적용될 예정이다.

* (시행일정) 건설폐기물('22.10) → 지정폐기물('23.10) → 사업장일반폐기물('24.10)

□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(가칭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*)에 전송하기 위한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*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(www.allbaro.or.kr/siren)

○ 폐기물 수집·운반자는 폐기물 수집·운반차량에 차량용단말기(GPS)를 설치하여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한다. 이를 통해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 지역 경유 등 이상 운반 경로를 탐지한다.

○ 폐기물을 처분·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·인계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·계량시설·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한다.

※ 계량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자의 경우 계량값은 공인계량시설에서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기 앱을 통해 전송하고, 계량시설 영상정보 전송 의무는 제외

- 다만, 처리자가 자동전송단말기 외에 한국환경공단 적정추진센터(이하 센터)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정보의 요건을 갖춘 정보를 전송하면 현장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인정받는다.

- 계량값 자동전송을 통해 폐기물 인수·인계량의 위·변조를 방지하고, 사업장에서 전송한 영상정보 분석을 통해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수집·운반 등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한다.

※ 현장정보 전송을 위한 장치(차량용단말기, 자동전송단말기, 영상정보처리기기)의 설치 위치, 규격 및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 〔별표 1〕과 〔별표 2〕 참고

○ 이 밖에, 폐기물 처리자는 현장정보 전송장치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·관리해야 하고, 전송장치에 장애가 발생해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때에는 장애사유와 복구계획 등을 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.

○ 또한, 현장정보 활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정보 전송자는 자신이 전송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, 지자체와 유역(지방)환경청에는 관할 대상 업체의 현장정보에 대한 검색·확인 기능을 부여했다.

□ 환경부는 이번 고시(안)을 환경부 누리집(www.me.go.kr)에 공개하고,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,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. 아울러 고시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제도가 적용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.

□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며, “앞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와 같은 문제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업체들의 협조를 구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붙임 1.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관리시스템 개요.
2. 질의/응답. 끝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1 **폐기물처리현장정보 관리시스템 개요**

1 추진목적 및 근거

○ **(목적) 폐기물처리 현장정보**(계량값, 위치정보·영상정보 등) 전송 의무화로 폐기물 **인수·인계량 위변조** 및 **부적정처리** 등 방지

○ **(법적근거)** 「**폐기물관리법**」 제18조제3항

>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, 수집·운반,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, 수집·운반,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·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, 위치정보,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**폐기물처리 현장정보**를 **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**하여야 한다.

2 주요내용

○ **(시행주체)** 환경부 (한국환경공단 대행)

○ **(적용대상)** '22년 10월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순차적*으로 시행

* 건설폐기물('22.10월) → 지정폐기물('23.10월) → 사업장일반폐기물('24.10월)

○ **(행위자별 의무사항) 현장정보 전송장치 설치** 및 **현장정보 전송**

구분		설치장비			전송정보
		장비종류	설치위치	설치대수	
수집·운반하는 자		차량용단말기(GPS)	수집운반차량	1대	위치정보
처분 및 재활용 하는 자	계량시설 설치의무자	자동전송단말기	사무실	1대	계량값 및 영상정보 (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장소)
		영상정보처리기기 (CCTV)	진입로	1대 이상	
			계량시설	1대 이상	
			보관시설	1대 이상	
	그 외의 자	자동전송단말기	사무실	1대	계량값 및 영상정보 (진입로 보관장소)
		영상정보처리기기 (CCTV)	진입로	1대 이상	
			보관시설	1대 이상	

○ **(기대효과) 불법폐기물 적시 탐지** 및 환경청·지자체 등 **행정기관의 지도·점검 업무 수행 지원** 등을 통한 사업장폐기물의 체계적·효율적 관리

※ ▲폐기물 불법투기 의심지역 경유 등 이상 운반경로 탐지, ▲폐기물 인수·인계량 위·변조 방지, ▲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의 불법적 수집·운반 예방 등

3 향후계획

○ 건설폐기물 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 개최 (6월~7월)

○ 지정 및 일반사업장폐기물 현장정보 처리를 위한 시스템 보완

붙임2 질의/응답

1.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가 모든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에게 적용되는지?

○ 사업장폐기물을 △**스스로 처분 또는 재활용**하는자(법 제18조), △**학교·연구기관 등 시험·연구목적**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자(법 제29조제2항제1호), 그리고 △**폐기물처리신고자**(법 제46조)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2.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별로 전송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?

○ 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자는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하고,

○ 폐기물을 처분·재활용하는 자 가운데, 계량시설 설치 의무자는 계량값과 진입로·계량시설·보관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정보를, 그 외의 자는 계량값*과 진입로·보관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.

* 계량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자는 수집·운반자가 **공인계량시설**에서 발급받은 **계량증명서**를 받아 센터가 배포한 이동통신단말기 앱을 통해 전송

< 처리자별 전송 대상 현장정보 >

처리자 \ 현장정보		계량값	위치정보(GPS)	영상정보(CCTV)		
				차량정보(번호)		보관장소
				진입로	계량시설	
수집.운반자		×	○	×	×	×
처분 및 재활용 하는 자	계량시설 설치 의무자	○	×	○	○	○
	그 외의 자	○	×	○	×	○